

군포도시공사 제3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 받은 「군포도시공사 보수규정」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 배 재 국



2026년 7월 24일

군포도시공사 규정 제 180 호

군포도시공사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

군포도시공사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 2]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경력환산 기준표

적 용 대 상	적용률
○ 국가 및 지방공무원(임시직 제외)으로 근무한 경력 - 국가공무원법 제2조, 지방공무원법 제2조 ○ 군경력(전투경찰, 의무경찰, 공익근무요원 근무기간포함) ○ 정부투자기본관리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 및공단,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서 근무한 경력	100%
○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근거한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○ 은행법 제2조, 제5조에 정한 금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○ 초·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정한 각종 학교(유치원 제외)에서 근무한 경력 ○ 관련 특별법에서 정한 기타 공공사채 및 전문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○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(투자기관 포함)의 상용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○ 퇴직당시 종사원 500인 이상 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	80%
○ 상장 기업체(거래소 시장에 한정한다)로서 해당분야 종사자 ○ 퇴직당시 종사원 300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	60%
○ 퇴직당시 종사원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 (50인미만 인정치 않음)	50%
1. 이 기준에 예시되지 않은 직종 또는 모호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처리지침을 준용한다. 2. 이중경력은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. 3. 경력기관 환산은 월수를 단위로 하고, 15일이상은 1개월 단위로 하며, 총 경력환산년수 중 1년 미만 월수는 당 공사 당해직급에 재직한 경력으로 인정하며, 입사 후 실제 근무연수를 더하여 1년이 되면 정기 승급시에 1호봉을 승급케 한다. 다만, 경력의 성격이 바뀌는 경우에는 해당기간만 적용한다.	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경 영 기 획 실
입 안 자	직 위 성 명	경 영 기 획 실 장 곽 성 우
	직 위 성 명	인 사 총 무 팀 장 신 재 두
	담당자 성명 (전 화)	이 유 경 (3 9 0 - 7 6 4 3)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

[별표 2]

경력환산 기준표

적 용 대 상	적용률
(생 략) ○ 정부투자기본관리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,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, 공사,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사에서 근무한 경력	100%
○ 공무원연금법 제47조, 동시행규칙에 정한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(생 략)	80%
생 략	
1.이 기준에 예시되지 않은 직종 또는 모호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. (생 략)	

개 정 안

[별표 2]

경력환산 기준표

적 용 대 상	적용률
(생 략) ○ 정부투자기본관리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 및 공단,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 공단에서 근무한 경력	100%
○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근거한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(생 략)	80%
생 략	
1.이 기준에 예시되지 않은 직종 또는 모호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처리지침을 준용한다. (생 략)	